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,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,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국방부령 제 호

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사건송치 등) ①·② (생략)	제64조(사건송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「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위반 사건 중 「군형법」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<u>지방검찰청</u>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공소청</u> ----- -----.